

2009년 농정시책이 이렇게 달라집니다.

농림수산식품부

2009년부터 달라지는 주요 내용

- ① 시·군 유통회사 설립·지원 : 소비지 대형유통업체 확산 등 유통환경 변화에 대응하여 산지에 규모화 되고 전문화된 시·군 유통회사를 설립한다. 시·군 유통회사는 농어업인, 시·군 등의 출자를 통해 설립되며, 기업적 경영방식을 갖춘 전문 CEO에 의해 경영되는 농수산물 판매전문 회사로 농어업인의 소득 증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는 2008.12.24. 시·군 유통회사 설립을 지원할 사업대상자 6개 군을 확정·발표하였으며, 회사 설립 후 운영자금, 원물확보자금 저리융자, 법인 및 CEO 선정 지원, 직원교육프로그램 운영 등 다양한 지원책이 뒤따른다.
※ 사업대상자(6개) : 보은, 고흥, 화순, 완동, 의령, 합천
- ② 대규모 농어업 회사 육성 추진 : 대규모 농어업회사에 간척지를 장기 임대할 수 있도록 농어촌정비법 시행령을 개정(2008.12.3.)하는 등 농림수산식품의 수출을 적극 뒷받침한다. 공모를 통해 대규모 농어업회사 사업시행자를 선정할 계획이며, 간척지 장기임대, 인프라 구축 등 구체적인 사업시행방안이 마련된다.
- ③ 농어촌 뉴타운 조성사업 추진 : 젊은 인력이 지역 농산업의 핵심 주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2011년까지 입주를 목표로 50~300세대 규모의 농어촌 뉴타운이 시범적으로 5개소 조성된다. 기숙형 공립고와 연계한 교육여건 개선, 생활 편의시설 등이 종합적으로 구비된 전원형 주택단지로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 ④ 쇠고기 이력추적제 전면 시행 : 전국의 모든 소를 대상으로 한 이력추적제가 2008.12.22.부터 시행되어 소의 출생에서부터 사육, 도축, 가공, 판매과정의 정보를 기록·관리함으로써 질병이나 위생·안전에 문제가 발생할 경우 그 이력을 추적하여 회수·폐기 등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게 된다. 아울러, 2009.6.22.부터는 귀표가 부착되지 않은 소는 도축이 금지된다.
- ⑤ 축산발전기금 용자 취급기관 확대 및 축산업 등록대상 확대 : 축산발전기금의 용자 취급기관을 농협 및 일반 은행뿐만 아니라 새마을금고, 신용협동조합까지 확대하여 농어업인들이 편리

하게 정책자금을 신청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양계업과 오리사육업의 축산업 등록대상을 사육시설 면적 300㎡ 초과하는 경우에서 50㎡를 초과하는 경우로 확대하고, 축산업 등록기준에 종오리업을 신설함으로써 조류인플루엔자 상시 방역체계 구축 및 사전 예방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 된다.

- ⑥ 도매시장 출하자 신고 및 안전성 검사 의무화 : 도매시장 농수산물 출하자 신고를 의무화하고, 도매시장에서 거래되는 농수산물에 대해 유해물질 잔류허용기준 등의 초과 여부에 대한 안전성 검사도 의무화하여 유통거래의 투명성 제고와 안전한 농수산물 구입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한다.
- ⑦ 양식물 통합면허 및 미더덕류에 대한 시설기준 마련 등 : 그간 세분화된 양식물별 면허를 양식방법이 같으면서 서식환경이 비슷한 수하식은 파래와 매생이류, 바닥식은 백합·고막·가무락 등을, 축제식은 어류·갑각류·해삼을 통합하여 면허를 받을 수 있게 된다. 또한 미더덕류에 대한 시설기준을 마련하여 재해발생시 보상처리를 위한 재해조사 대상에 포함되어 미더덕류 양식시설도 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된다.

1. 시·군 유통회사 설립·운영지원 사업 추진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2009.1.1.)>

- 구분 : 시·군 유통회사 설립·운영지원 사업 추진
- 종전 : 2009 신규사업
- 달라지는 내용
 - 농산물 산지에 규모화·전문화된 시·군 유통회사 설립 지원
 - 법인설립, 농가 조직화, 브랜드 개발·홍보 등 회사 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3년간 총 20억원 지원(보조 100%)
 - ※ 평가를 통해 사업대상자 선정
- 관계부서 : 농림수산식품부 유통정책팀 (☎ 02-500-1986)

<내용해설>

- 소비자 대형유통업체 확산 등 유통환경 변화에 대응하여 농산물 산지에 규모화·전문화된

시·군 유통회사 설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 시·군 유통회사는 농어업인·시·군 등의 출자를 통한 다양한 자본구조, 전문 CEO에 의한 책임경영, 기존 조직과의 효율적 역할분담 등을 통해 기업적 경영방식을 갖춘 농수산물 판매전문 회사입니다.
- 농수협, 영농조합법인 등 기존 산지유통조직과 연계를 통해 규모화 하여 대형유통업체 등과 직거래 비율을 높임으로써 유통비용을 절감하고 농어업인의 소득증대에 기여 등 다양한 효과가 기대됩니다.
- 시·군 유통회사 설립을 위해서는 2009년 농림사업시행지침에 의거하여 사업신청을 하여야 하며, 평가를 통해 사업대상자로 선정되어야 합니다.
- 정부에서는 시·군 유통회사에 법인설립, 농가 조직화, 브랜드 개발·홍보 등 회사 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3년간 총 20억원 지원(보조 100%)하고, 원불확보에 필요한 자금은 “산지유통활성화사업”을 통해서 용자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 농림수산식품부 > 농림사업시행지침서 전자매뉴얼 > 2009년 농림사업시행지침서

<시·군 유통회사 지원사업 주요내용>

■ 자격요건

- 법인형태 : 상법상의 주식회사 또는 주식회사형 농업회사법인
- 생산자(농어업인, 영농·영어조합법인) 및 시·군이 각각 총 자본금의 1/4 이상 출자하고, 설립초기 현금 자본금이 30억원 이상
- CEO는 농림수산식품부 “농업 CEO 인재풀”에서 선입도록 의무화

■ 지원내용

- 운영자금(보조 100%) : 3년간 총 20억원 이내 (매년 6.6억원 수준)
- 원물확보 자금(용자 80%, 자부담 20%) : 70억원 이내 지원

■ 사업추진 및 신청절차 : 설립타당성검토(시·군) ⇒ 설립추진단 구성(시·군) ⇒ 사업신청서 작성 및 제출(설립추진단 ⇒ 시·군 ⇒ 시·도 ⇒ 농림수산식품부) ⇒ 선정평가(농수산물유통공사) ⇒ 사업대상자 선정(농림수산식품부)

■ 2010년 사업신청 : 예비신청서 제출(2009.2월말), 모집공고(2009.6월), 신청서 제출(2009.8월말)

2. 대규모 농어업회사 육성 추진

<농어촌정비법시행령(2008.12.3)>

■ 구분 : 대규모 농어업 회사 육성 추진

■ 종전 : 신설

■ 달라지는 내용

- 간척지(500ha 내외)에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대규모 농어업회사 설립을 지원
- 농수산물의 생산시설에 농수산물의 가

공·저장·유통시설 등이 포함된 단지조성 사업을 하려는 자에 대하여도 매립지 등을 임대·매각 및 일시사용하게 할 수 있도록 함(2008.12.3. 농어촌정비법시행령 개정)

※ 평가를 통해 사업대상자 선정

■ 관계부서 : 농림수산식품부 농업정책과
(☎ 02-500-1708)

<내용해설>

■ 2012년 농식품 수출 100억불 달성의 첨병이 될 대규모 농어업회사 시범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대규모 농어업회사에 간척지를 장기 임대할 수 있도록 「농어촌정비법 시행령」을 개정하였습니다.

※ 농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농수산 관련 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농수산물의 생산시설에 농수산물의 가공·저장·유통시설 등이 포함된 단지조성 사업을 하려는 자에 대하여도 관리·처분계획에 해당 용도로 구획된 매립지 등을 임대·매각 및 일시사용하게 할 수 있도록 함.
(2008.12.3. 농어촌정비법시행령 개정)

■ 대규모 농어업회사는 개방화 시대에 우리 농식품산업의 수출 경쟁력을 한 단계 끌어올려 수익을 창출하기 위한 모델로서 기업형 영농 실현 및 기업유치 등을 통해 미래 농식품 산업의 한 축을 담당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 대규모 농어업회사 육성사업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회사공모 신청을 하여야 하며, 평가를 통해 사업시행자로 선정되어야 합니다.

○ 간척지에 농어업 회사를 경영하고자 하는 경우 단독법인 또는 연합체(컨소시엄) 형태로 사업신청이 가능합니다.

○ 평가를 거쳐 선정된 사업자는 간척지 장기임대, 공통으로 요구되는 인프라 구축지원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 한국농촌공사 > 알림마당 > 공지사항

<대규모 농어업회사 육성사업 주요내용>

- 사업개요 : 간척지(500ha 내외)에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대규모 농어업회사 설립을 지원
- 사업대상지 선정방법 및 결과 : 시범사업 대상으로 ① 전북 김제시 광활면 새만금 간척지(700ha), ② 전남 해남군 산이면 영산강 간척지 산이 2-1공구(713ha) 선정
- 정부지원방안
 - 간척지에 공통적으로 요구되는 최소한의 인프라 구축 지원
 - 기존 농림사업을 활용하는 한편, 프로젝트 파이낸싱(PF), 펀드, BTO/BTL 등 새로운 투자지원 유도
- 사업자 공모계획
 - 사업자 공모 공고 : 2008.12.16.(화)
 - ※ 공모기간 : 약 90일
 - 사업설명회 개최 : 2008.12.22.(월) 16:00, 한국농촌공사
 - 제안서 평가 : 10명 내외로 구성된 심사평가단이 평가,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3. 농어촌 뉴타운 조성사업 추진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2009.1.1.)>

- 구분 : 농어촌 뉴타운 조성사업 추진
- 종전 : 2009 신규사업
- 달라지는 내용
 - 젊은 농어업인력 육성을 위한 농어촌 뉴타운 조성사업 추진
 -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과 자녀교육 및 복지, 영농기술교육 및 지원을 연계, 종합지원
 - 2011년까지 5개 시·군에 대해 시범실시 후 2012년부터 본사업 추진

- 관계부서 : 농림수산식품부 농촌지역개발과 (☎ 02-500-1800)

<내용해설>

- 도시의 30~40대 젊은 인력을 지역 농산업의 핵심 인력으로 육성하기 위한 농어촌 뉴타운 조성사업이 추진됩니다.
 - 젊은 인력이 지역 농산업의 핵심 주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과 함께 양질의 자녀교육 및 복지환경 조성, 개인별 영농계획에 맞는 기술교육 및 지원 등을 연계하여 종합 지원합니다.
 - 젊은 인력 확보를 통하여 고령·영세 농어업인에 의해 유지되고 있는 농어업의 경쟁력 제고와 살맛나는 농어촌 조성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 우선, 내년부터 2011년까지는 5개 시·군에 대하여 시범 실시하고, 본사업은 2012년부터 추진할 계획입니다.
 - 사업신청한 14개 시·군(2008.12.)에 대하여 현장조사 및 전문가 평가 등을 거쳐 내년 1월 시범지구를 선정하고, 2011년까지 입주률 목표표로 기반시설 및 건축공사가 진행됩니다.
 - 지역여건에 따라 50~300세대 규모로 조성할 계획이며, 입주대상자 자격요건은 일정 수준 이상의 경영규모를 갖춘 30~40대 및 창업후 계농업인, 농수산물 가공·유통 종사 농어업인입니다.
- ☞ 농림수산식품부 > 알림소식 > 새소식 > 보도자료

<농어촌 뉴타운 조성사업 주요내용>

- 지원대상 및 사업시행주체 : 시장·군수 (2009년도 시범사업 5개 지구)
- 지원내용
 -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
 - 기반시설 조성비 : 보조 100%(국고 70%,

지방비 30%)

- 임대주택 건축비 : 보조 40%, 용자 60%(연리 3%, 10년 거치 20년 상환)
- 분양주택 건축비 : 용자 100%(연리 3%, 3년 단기상환)

○ 영농어 기술 및 자금지원, 자녀교육 및 복지환경 조성 등은 기존사업비에서 연계, 종합 지원

- 사업추진절차 : 사업공모(시·군) ⇒ 예비타당성조사 및 대상지 선정(농식품부) ⇒ 기본계획 수립(시·군) ⇒ 마을정비구역지정(농식품부 승인) ⇒ 시행계획수립(시·도지사승인) ⇒ 사업시행(시·군) ⇒ 준공확정(시·도지사) ⇒ 분양 및 유지관리(시·군)

4. 도매시장 출하자 신고 및 안전성 검사 의무화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2009.1.1)>

- 구분 : 도매시장 출하자 신고 및 안전성 검사 의무화
- 종전 : 신설
- 달라지는 내용
 - 도매시장에 출하 하고자 할 경우 도매시장에 신고하여야 함.
 - 도매시장 통합홈페이지 및 개설자 신고
 - 도매시장개설자는 반입되는 농수산물에 대해 안전성 검사 실시
 - 안전성검사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해당 도매시장에 대한 출하 제한 조치
- 관계부서 : 농림수산물식품부 유통정책팀 (☎ 02-500-1985)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2009.6월)>

- 구분 : 도매시장 견본 거래 허용
- 종전 : 신설
- 달라지는 내용
 - 개설자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농림수산물 품부령으로 정하는 일정기준 이상의 시설에 보관·저장중인 거래대상 농수산물의 견본을 도매시장에 반입하여 거래할 수 있음.
 - 거래대상 농수산물 견본품을 통한 신용거래로 물류비용을 절감할 수 있음.
- 관계부서 : 농림수산물식품부 유통정책팀 (☎ 02-500-1984)

<내용해설>

- 도매시장 농수산물 출하자의 신고를 의무화하여 거래의 투명성을 높였습니다.
 - 도매시장에 농수산물을 출하하고자 하는 생산자 및 생산자단체 등은 도매시장 개설자에게 신고하여야 합니다.
 - 출하자 신고를 하지 않고 출하하는 경우에는 도매시장법인 등이 수탁을 거부 할 수 있습니다.
 - ※ 출하자 신고 : 각 도매시장관리사무소, 도매시장 통합홈페이지(<http://market.affis.net> 접속) 신고 가능
- 도매시장에서 거래되는 농수산물 안전성검사를 실시하여 소비자보호 및 안전성에 대한 신뢰를 강화하였습니다.
 - 도매시장 개설자(市)는 해당 도매시장에 반입되는 농수산물에 대하여 유해물질의 잔류허용기준 등의 초과 여부에 대한 안전성검사를 실시하도록 의무화 하였습니다.
 - 도매시장에 기준미달품 출하자는 개설자가 출하를 제한 할 수 있습니다.
 - ☞ 농림수산물식품부 도매시장통합홈페이지 > 최근소식

<도매시장 출하자 신고 및 안전성 검사 주요내용>

- 도매시장 출하자 신고
 - 신고자 : 도매시장에 농수산물을 출하하고자 하는 생산자 및 생산자단체 등
 - 신고서류 : 개인(신분증 사본 또는 사업자등록증 1부), 법인(법인등기부 등본 1부)
 - 신고처 : 도매시장통합홈페이지(직접 접속 신고), 각 도매시장관리사무소
- 도매시장 안전성 검사
 - 안전성검사 실시자 : 도매시장개설자(도매시장관리사무소)
 - 안전성검사 대상 : 도매시장에 출하되는 모든 농수산물
 - 검사 방법 : 도매시장의 개설자가 검사주기, 검사품목 등 검사계획을 수립 시행

5. 시설원에 에너지이용 효율화 사업 추진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2009.1.1.)>

- 구분 : 시설원에 에너지이용 효율화 사업 추진
- 종전 : 2009 신규사업
- 달라지는 내용 : 고유가 및 농자재가 인상으로 인한 시설원예농가의 경영부담 완화를 위해 에너지 절감형 난방·보온시설 지원
- 관계부서 : 농림수산식품부 채소특작팀 (☎ 02-500-2044)

<농산물 품질관리법(2009.1.1.)>

- 구분 : 물류표준화 사업 사업담당기관 일원화
- 종전
 - 사업담당관리주체
 - 물류기기 구입지원 : 시·도
 - 물류기기 공동이용 : 농협

■ 달라지는 내용

- 사업담당기관 일원화
 - 지자체와 농협에서 이원화하여 관리하던 것을 농협으로 일원화하여 관리
- 사업신청·접수처 : 농협 시·군 지부
- 2009년 이후 구입하는 장비의 사후관리는 농협에서 실시하고, 2008년 이전분은 사후관리 기간 동안 지자체에서 관리

- 관계부서 : 농림수산식품부 채소특작팀 (☎ 02-500-2037)

<농약관리법 시행령 제21조 1항 (2009.6.1.)>

- 구분 : 농약 안전용기 사용 의무화
- 종전 : 신설
- 달라지는 내용

- 농약 제조업자나 수입업자가 자신이 제조 또는 수입한 농약을 판매할 때에는 농약안전용기를 사용하여야 합니다.
- 개정규정은 2009.6.1. 이후 최초로 제조업자가 출하하거나 수입업자가 판매하는 농약부터 적용한다.

- 관계부서 : 농림수산식품부 친환경농업팀 (☎ 02-500-1963)

<내용해설>

- 유류 및 농자재 가격 상승으로 인한 시설원예농가의 경영비 부담 경감과 에너지이용 효율화를 위해 에너지 절감형 난방·보온시설 설치 사업비를 지원합니다.
- 사업내용 : 에너지 절감형 난방·보온시설[다겹보온커튼, 고효율(전기·석탄·중유·목재·경유) 난방기, 순환식 수막재배시설, 자동보온덮개 등]
- 사업규모 : 2009년부터 2013년까지 4,500억원(4,500억원)

- 사업담당부서 : 농림수산식품부(채소특작팀)
시·도 및 시·군(농산물유통과, 친환경농업
팀 등)
- 신청기관 : 시설설치 해당지역 시·군(농산물
유통과, 친환경농업팀 등)
- ☞ 농림수산식품부 > 농림사업시행지침서 전자매뉴
얼 > 2009년 농림사업시행지침서

<시설원에 에너지이용 효율화 사업>

- 추진배경 : 시설원에 농가의 경영비 부담 경감
과 에너지이용 효율화
- 주요지원내용
 - ① 지원시설 : 에너지 절감형 난방·보온시설 [다
겹보온커튼, 고효율(전기·석탄·중유·목
재·경유)난방기, 순환식 수막재배시설, 자
동 보온덮개 등]
 - ② 지원대상 : 10a이상 시설원에(채소·화훼를
재배하는 농업인(농업법인), 단, 시설원예품질
개선을 추진한 원예전문생산단지 농업인은
제외)
 - ③ 2009예산(지원조건) : 520억원(국고 30%, 용
자 20%(금리 3%, 3년 거치 7년 상환), 지방
비 30%, 자담 20%)
- 시행일 : 2009. 1. 1.

6. 쇠고기 이력추적제 전면 시행

<소 및 쇠고기 이력추적에 관한 법률 (2008.12.22.)>

- 구분 : 쇠고기 이력추적제 전면 시행
- 종전 : 신설
- 달라지는 내용
 - 2008.12.22.부터 법률에 따라 전국 모든 소를
대상으로 이력추적제 시행
 - 소의 출생·폐사, 양도·양수 등 신고 및
귀표부착 등 의무화

- 소의 도축, 식육포장처리 및 판매 단계의
개체식별번호 표시 등의 의무는
2009.6.22.부터 적용
- 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과태료
- 관계부서 : 농림수산식품부 축산물위생팀
(☎ 02-500-2109)

<내용해설>

- 소 및 쇠고기 이력추적에 관한 법률이
2007.12.21. 제정되고 그 하위법령인 시행령
과 시행규칙, 관련 고시 등이 마련되어
2007.12.22.부터 전국의 모든 소를 대상으로
한 이력추적제가 실시됩니다.
 - 쇠고기 이력추적제는 소의 출생에서부터 사
육, 도축, 가공, 판매과정의 정보를 기록·관
리하여 질병이나 위생·안전에 문제가 발생할
경우 그 이력을 추적하여 회수·폐기 등 신속
하게 대처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입니다.
- 법 시행으로 소의 출생, 양도·양수, 수출입
신고 및 귀표 부착 등을 이행해야 하는 사육단
계는 2008.12.22.부터 적용되고, 소의 도축,
식육포장처리, 식육판매 등 유통단계는 6개월
후인 2009.6.22.부터 적용됩니다.
 - 유통단계가 시행되는 2009.6.22.부터는 귀표
가 부착되지 아니한 소의 도축이 금지됩니다.
- 소비자는 유통단계가 시행되는 내년 6월부터
구매할 쇠고기에 대하여 소의 종류, 원산지,
출생일, 사육자, 등급 등의 정보를 휴대전화
(6626+무선인터넷키)나 쇠고기이력추적시스
템(www.mtrace.go.kr)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 ☞ 농림수산식품부 > 알림소식 > 새소식 > 보도자
료 > 쇠고기 이력추적제, 12월 22일부터 사육단
계 시행

<소 및 쇠고기 이력추적에 관한 법률 주요 내용>

- 목적 : 소의 귀표에 표시된 개체식별번호를 통해 소의 사육 및 도축·가공·판매과정을 모두 추적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내산 쇠고기의 안전성에 대한 소비자의 신뢰 확보로 소 관련 산업발전 기여
- 주요내용
 - 소의 소유자는 소가 출생·폐사하거나 양도·양수한 경우에 지역축협 등 이력관리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기관에 30일 이내에 신고하여야 하고,
 - 도축업자는 소를 도축신청 받았을 때 귀표의 부착, 개체식별대장 등록 등을 확인한 후에 도축하여야 하고, 도체에 개체식별번호를 표시하고 반출하여야 하며,
 - 식육포장처리업자는 도체에 표시된 개체식별번호를 가공한 부분육이나 포장육에 표시하고 판매하여야 하며,
 - 식육판매업자는 부분육이나 식육표시판 등에 개체식별번호를 표시하고 판매하여야 한다.
 - 또한 소의 소유자와 도축업자·식육포장처리업자·식육판매업자가 법에서 정한 신고나 개체식별번호 표시, 거래실적 기록 등을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과태료 등이 부과된다.
 - 시행일 : 사육단계는 2008.12.22.부터 적용되고, 소의 도축, 식육포장처리, 식육판매 등 유통단계는 6개월 후인 2009.6.22.부터 적용

7. 축산발전기금 용자취급기관 확대 및 축산업 등록대상 확대

<축산법 시행령(2009.6월)>

- 구분 : 양계업과 오리 사육업의 축산업 등록대상 확대

- 종전 : 가축사육시설면적 : 300㎡ 초과
- 달라지는 내용 : 가축사육시설면적 : 50㎡ 초과
- 관계부서 : 농림수산식품부 축산정책팀
(☎ 02-500-2063)

<축산법 시행령(2009.6월)>

- 구분 : 축산업 등록기준의 종축업에 등록대상 추가
- 종전
 - 축산업 등록기준
 - 종축업 : 종돈업, 종계업
- 달라지는 내용
 - 축산업 등록기준
 - 종축업 : 종돈업, 종계업, 종오리업
- 관계부서 : 농림수산식품부 축산정책팀
(☎ 02-500-2063)

<축산법 시행령(2008.12월)>

- 구분 : 축산발전기금 용자 취급기관 확대
- 종전
 - 용자취급기관
 - 농협, 일반 시중은행
- 달라지는 내용
 - 용자취급기관
 - 농협, 일반 시중은행, 새마을금고, 신용협동조합
- 관계부서 : 농림수산식품부 축산정책팀
(☎ 02-500-2063)

<내용해설>

- 2008.12월부터 축산발전기금의 용자취급기관 확대하고, 2009.6월부터 조류인플루엔자에 대한 방역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양계업과 오리사육업의 등록대상을 확대하며, 축산업 등록기준에 종오리업 추가를 골자로 하는 축산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시행될 예정입니다.

- 축산발전기금의 용자 취급기관을 농협 및 일반 은행뿐만 아니라 새마을금고 및 신용협동조합까지 확대함으로써 농어업인들의 용자기관 선택이 편리해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 양계·오리사육업의 경우 축산업 등록대상 가축 사육시설 면적을 300㎡ 초과하는 경우에서 50㎡를 초과하는 경우로 확대하고, 축산업 등록기준이 없는 중오리업을 신설함으로써 조류인플루엔자 상시 방역체계를 구축 및 사전 예방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축산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 주요 내용>

- 추진배경 : AI(조류인플루엔자)에 대한 상시 방역체계 구축과 농어업인들의 용자취급기관의 선택 기회 확대 도모
- 주요내용
 - ① 양계업과 오리사육업의 축산업 등록대상 확대(2009.6월부터 시행)
 - 가축사육시설면적 : (현행) 300㎡ 초과 ⇒ (개정) 50㎡ 초과
 - ② 축산업 등록대상인 종축업에 중오리업 추가 (2009.6월부터 시행)
 - 종축업 : (현행) 종돈업, 중계업 ⇒ (개정) 종돈업, 중계업, 중오리업
 - ③ 축산발전기금 용자 취급기관 확대(2008.12월부터)
 - 용자 취급기관 : (현행) 농협, 일반 시중은행 ⇒ (개정) 농협, 일반은행, 새마을 금고, 신용협동조합
- 시행일 : ①, ② : 2009.6월 ③ : 공포 즉시 시행(2008.12월)

8. 축산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 시행

<축산법 시행규칙(2008.12월)>

- 구분 : 가축인공수정사 면허증 재발급 기관 확대
- 종전
 - 재발급 요청시
 - 당초 발급한 시·도지사
- 달라지는 내용
 - 재발급 요청시
 - 모든 시·도지사
- 관계부서 : 농림수산식품부 축산정책팀 (☎ 02-500-2063)

<축산법 시행규칙(2008.12월)>

- 구분 : 축산물 등급판정확인서 위·변조 장치 마련 및 인터넷 추가발급
- 종전
 - 등급판정확인서 복사시 위·변조 방지장치가 없어 위·변조 가능
 - 인터넷 발급 없음
- 달라지는 내용
 - 등급판정확인서 위·변조 방지장치 마련
 - 복사시 “사본” 글씨가 표시되고, “원본” 글씨가 없어지는 대신 검정색으로 표시
 - 축산물의 매수인 또는 축산물의 등급판정 신청인이 인터넷에서도 등급판정확인서 추가 발급 가능
- 관계부서 : 농림수산식품부 축산정책팀 (☎ 02-500-2063)

<내용해설>

- 2008.12월부터 가축인공수정사 면허증 재발급 방식을 개선하고, 등급판정확인서 위·변조 방지를 위해 관련 서식개정과 함께 인터넷

으로 추가 발급받을 수 있도록 축산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이 시행될 예정입니다.

○ 가축인공수정사 면허증 재발급시 당초 발급한 시·도지사에게만 신청토록 한 것을 모든 시·도지사에게 신청할 수 있도록 개선함으로써 국민 불편을 해소하였습니다.

○ 등급판정확인서에 위·변조 방지장치를 마련하면서, 축산물의 매수인 또는 등급판정의 신청인이 인터넷에서 등급판정확인서를 추가 발급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등급판정확인서에 대한 국민 신뢰향상이 기대됩니다.

☞ 농림수산물부 > 알림소식 > 새소식 > 보도자료 > 축산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 시행

<축산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 주요 내용>

■ 추진배경 : 가축인공수정사 면허증 재발급 방식 개선과 등급판정확인서 위·변조 방지장치 마련 및 인터넷 추가 교부가 가능하도록 개선함으로써 국민불편 해소

■ 주요내용

① 가축인공수정사 면허증 재발급 방식 개선
- 재발급 요청시 신청 : (현행) 당초 발급한 시·도지사 ⇒ (개정) 모든 시·도지사

② 등급판정확인서 위·변조 방지장치 마련(이중화 복사방지 코드장치)하고, 인터넷으로도 등급판정확인서 추가 발급 가능

- 복사시 "사본" 글씨가 표시되면서, "원본" 글씨가 없어지는 대신 검정색으로 표시

- 축산물의 매수인 또는 축산물의 등급판정 신청인이 인터넷에서도 등급판정확인서를 추가 발급받을 수 있도록 개선

■ 시행일 : 공포 즉시 시행(2008.12월)

9. 초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시행

<초지법 시행규칙(2009.5.21.)>

■ 구분 : 관광지·관광단지 조성시 대체초지 조성비 전액면제

■ 종전 : 관광지·관광단지 조성시 대체초지 조성비 100분의 50 감면

■ 달라지는 내용 : 관광진흥법 제2조에 따른 관광지·관광단지 조성을 위해 초지를 전용할 경우 대체초지조성비 전액면제

■ 관계부서 : 농림수산물식품부 자원순환팀
(☎ 02-500-2096~7)

<내용해설>

■ 2009.5.21.부터 관광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관광지 및 관광단지에 대한 대체초지 조성비 감면기준 완화를 골자로 하는 초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이 시행될 예정입니다.

○ 관광진흥법 제2조에 따른 관광지·관광단지 조성을 위해 초지를 전용할 경우 대체초지 조성비 전액을 면제받을 수 있게 됩니다.

☞ 초지법 시행규칙 개정 주요내용

<새 초지법시행규칙 주요 내용>

■ 추진배경 : 관광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관광수지 적자 개선을 위한 규제완화

■ 주요내용 : 관광진흥법 제2조에 따른 관광지·관광단지에 대한 대체초지조성비 전액면제

■ 시행일 : 2009.5.21.

10. 가축전염병예방법에 특정위험물질(SRM) 규정 신설

<가축전염병예방법 제26(2008.9.11.)>

■ 구분 : 소해면상뇌증 발생 국가산 소의 특정 위험물질(SRM) 규정 신설(제2조의 6 신설)

- 종전 : 신설
- 달라지는 내용
 - 특정위험물질"이란 소해면상뇌증 발생 국가 산 소의 조직 중 다음에 해당되는 것을 말한다.
 - 모든 월령의 소에서 유래한 편도와 회장 원위부
 - 30개월령 이상된 소에서 유래한 뇌·눈·척수·머리뼈·척추
 -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소해면상뇌증 발생 국가별 상황과 국민의 식생활 습관 등을 고려하여 별도로 지정·고시하는 물질
- 관계부서 : 농림수산식품부 동물방역팀
(☎ 02-500-2127)

<내용해설>

- 소해면상뇌증 발생 국가산 소의 조직 중 수입 금지할 수 있는 특정위험물질(SRM) 규정 신설
 - "특정위험물질"(SRM)이란?
 - 모든 월령의 소에서 유래한 편도와 회장 원위부
 - 30개월령 이상된 소에서 유래한 뇌·눈·척수·머리뼈·척추
 -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소해면상뇌증 발생 국가별 상황과 국민의 식생활 습관 등을 고려하여 별도로 지정·고시하는 물질
- 소해면상뇌증 발생국으로부터 보다 안전한 제품이 수입될 수 있는 법적 근거 마련
- 소해면상뇌증 발생국으로부터 수입되는 쇠고기 관련 제품에 대한 검역 철저
 - ☞ 농림수산식품부 > 정보광장 > 법령정보 > 현행법령

11. 「동물보호법」 "동물등록제" 시행 등

<동물보호법(2008.1.27. 시행)>

- 구분 : 동물등록제 시행
- 종전 : 신설
- 달라지는 내용
 - 2009.9.1.부터 부산광역시, 인천광역시, 경기도 등 동물등록이 의무화된 지역에서는 시·도 조례에 따라 3개월 이상 반려목적의 개를 사육하는 동물소유자는 해당 시·군·자치구에 동물등록
- 관계부서 : 농림수산식품부 동물방역팀
(☎ 02-500-2120)

<동물보호법(2008.1.27. 시행)>

- 구분 : 동물(개) 판매 연령의 변경
- 종전
 - 등록된 동물판매업소에서 판매 가능한 개의 연령
 - 1.5개월 이상
- 달라지는 내용
 - 2009.1.1.부터 동물보호법령에 따라 동물판매업을 등록한 동물판매업자는 반려의 목적으로 기르는 개를 판매할 경우 개의 월령은 2개월 이상으로 준수하여야 함.
- 관계부서 : 농림수산식품부 동물방역팀
(☎ 02-500-2120)

<동물보호법(2008.1.27. 시행)>

- 구분 : 동물복지 종합정보 시스템 운영
- 종전 : 신설
 - 달라지는 내용 : 2009.1.1.부터 동물(개) 분실 등에 관한 유기동물의 보호조치, 동물등록제, 동물판매업 등록 및 각종 교육 등 동물보호법 관련 제반에 관한 사항을 통합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동물복지 종합 정보시스템

(www.animal.go.kr) 운영

- 관계부서 : 농림수산식품부 동물방역팀
(☎ 02-500-2120)

<도축장 구조조정법(2008.12.14.)>

- 구분 : 도축장 구조조정 지원
- 종전 : 신설
- 달라지는 내용
 - 가축사육두수에 상응하는 적절한 도축능력을 유지하도록 구조조정을 유도·지원
 - 도축장경영자는 도축장의 구조조정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도축장구조조정추진협의회를 법인으로 설립
 - 가축 또는 축산물의 평균거래가격의 1천분의 3 이하에서 도축장경영자가 부담하는 분담금 등으로 도축장구조조정자금을 조성하여, 폐업하는 도축장의 지원 등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함.
- 관계부서 : 농림수산식품부 축산물위생과
(☎ 02-500-2105)

<내용해설>

- 2009.1.1.부터 동물보호법 제15조에 따라 시·군·자치구에 동물판매업을 등록한 동물판매업자는 반려의 목적으로 기르는 개를 판매할 경우 개의 월령은 2개월 이상으로 준수하여야 합니다.
 - 동물을 판매한 경우 「소비자기본법」 시행령 제8조 제3항에 따른 소비자 분쟁해결기준에서 정하는 계약서를 내주어야 하며, 계약서에는 동물판매업 등록번호, 업소명, 동물의 출생일자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 2009.1.1.부터 동물(개) 분실 등에 관한 유기동물의 보호조치, 동물등록제, 동물판매업 등록 및 각종 교육 등 동물보호법 관련 제반에 관한 사항을 통합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동

물복지종합정보시스템(www.animal.go.kr)을 운영합니다.

- 시스템에서는 개를 분실(습득)한 경우 신고 (<http://animal.go.kr:8084/portal/abandonment/loss.jsp>)하여 쉽게 찾을 수도 있으며, 동물보호·복지정책에 관한 법령정보, 공고, 보도자료, 궁금한 사항에 대한 질의응답 그리고 반려동물의 올바른 사육·관리를 위한 각종 일반상식 및 건강정보 등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 2009.9.1.부터 부산광역시, 인천광역시, 경기도 등 동물등록이 의무화된 지역에서는 시·도 조례에 따라 3개월 이상 반려목적의 개를 사육하는 동물소유자는 해당 시·군·자치구에 동물등록을 해야 합니다.
 - 고유의 동물등록번호가 기록된 내·외장형 무선전자개체식별장치(일명 “마이크로칩”) 또는 인식표를 개에 장착(부착)하고,
 - 국가 관리하는 동물복지종합정보시스템(www.animal.go.kr)에 동물의 정보와 소유자의 정보가 등록되어 관리됩니다.

12. 어장시설에 규격 부표(浮標) 사용을 지원

<농림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산어촌 지역개발 촉진에 관한 특별법(공포 후 6개월)>

- 구분 : 해상화물운송 운임 및 요금 지원
- 종전 : 신설
- 달라지는 내용 : 농림어업인이 도서지역에서 생산한 농축수산물을 육지로 운반할 경우 예산 범위에서 화물운송 운임 및 요금 지원
- 관계부서 : 농림수산식품부 농촌정책과
(☎02-500-1789)

<어장관리법 시행규칙(2008.12.29)>

- 구분 : 어장부표의 규격
- 종전 : 신설
- 달라지는 내용
 - 어구 등을 어장에 설치할 때 사용하는 부표(어장부표)의 규격을 정하여 사용토록 의무화함.
 - 발포 부표(폴리스타일렌 부표)의 경우 파손을 줄일 수 있는 고밀도(0.020g/cm³ 이상) 제품
 - 비발포 부표의 경우 경제성과 내구성을 고려하여 합성수지를 재료로 성형(成形)하거나 피복(被服)된 제품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하는 사업을 통하여 어업인에게 보급되는 친환경 개량 부표
- ※ 2008.12.29. 이후 최초로 설치하는 어장부표부터 적용함.
- 관계부서 : 농림수산식품부 양식산업과
(☎ 02-500-2384)

<내용해설>

- 연안어장의 환경개선과 오염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연안의 양식어장시설 등에 스티로폼 등 부표를 양식어장 등에 사용(시설)할 경우에는 일정기준 이상의 고밀도 규격제품을 설치하도록 의무화됩니다.
- ※ 2008.12.29 이후 최초로 어장에 설치하는 부표부터 규격제품 사용을 의무화함.
- 이와 관련하여 정부에서는 친환경 고밀도부표 보급을 지원하기 위하여 2009년도에 총사업비 8,050백만원(보조 40%, 자담 60%)을 투입하여 약 170만개의 고밀도부표 지원사업을 추진하게 됩니다.
- ☞ http://www.klaw.go.kr/DRF/link_sframe.jsp

<어장관리법 시행규칙 주요 내용>

- 추진배경 : 연안 어장환경 오염을 방지하고, 영세한 어업인 부담을 경감
- 주요내용
 - ① 어장에 사용하는 부표는 규격에 적합한 제품을 사용하도록 의무화함.
<규격제품기준>
가. 발포 부표(폴리스타일렌 부표)의 경우 파손을 줄일 수 있는 고밀도(0.020g/cm³ 이상) 제품
나. 비발포 부표의 경우 경제성과 내구성을 고려하여 합성수지를 재료로 성형(成形)하거나 피복(被服)된 제품
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하는 사업을 통하여 어업인에게 보급되는 친환경 개량 부표
 - ② 어장부표에는 규격, 부피, 밀도 및 제조자 등을 확인할 수 있도록 규격을 표시하여야 함
- 시행일 : 2008.12.29. 이후 최초로 설치하는 어장부표부터 적용

13. 어업면허의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령안 시행

<어업면허의 관리 등에 관한 규칙 (2008.12.11.)>

- 구분 : 양식업 통합면허 제도 도입
- 종전
 - 수하식(건홍식)
 - 파래, 매생이
 - 바닥식(간석식)
 - 백합, 고막, 바지락, 가무락, 동죽, 개량조개
 - 축제식
 - 어류, 갑각류, 해삼
- 달라지는 내용
 - 수하식(건홍식)

- 파래·매생이
- 바다식(간석지)
 - 백합·고막·바지락·가무락·동죽·개량조개
- 축제식
 - 어류·갑각류·해삼
- 관계부서 : 농림수산식품부 양식산업과
(☎ 02-500-2380)

<어업면허의 관리 등에 관한 규칙 (2008.12.11.)>

- 구분 : 미더덕류 양식 시설기준신설
- 종전 : 신설
- 달라지는 내용 : 미더덕류는 붕그물 수하연(1ha당 6,680줄 이하) 또는 판그물 수하연(폭 4.5m 이하, 연승 길이 기준 10% 이상의 조류 소통구를 중앙부에 설치) 시설
- 관계부서 : 농림수산식품부 양식산업과
(☎ 02-500-2380)

<어업면허의 관리 등에 관한 규칙 (2008.12.11.)>

- 구분 : 축제식 복합양식물에 어류·전복 추가
- 종전 : 어류·해삼, 갑각류·해삼
- 달라지는 내용 : 어류·해삼, 갑각류·해삼, 어류·전복
- 관계부서 : 농림수산식품부 양식산업과
(☎ 02-500-2380)

<어업면허의 관리 등에 관한 규칙 (2008.12.11.)>

- 구분 : 일반 복합양식물에 감태 추가
- 종전
 - 미역·우렁쉥이
 - 다시마·우렁쉥이
 - 다시마·전복

- 미역·전복
- 달라지는 내용
 - 미역·우렁쉥이·감태
 - 다시마·우렁쉥이·감태
 - 다시마·전복·감태
 - 미역·전복·감태
- 관계부서 : 농림수산식품부 양식산업과
(☎ 02-500-2380)

<어업면허의 관리 등에 관한 규칙 (2008.12.11.)>

- 구분 : 양식어장 관리선 지정 신청시 구비서류 간소화
- 종전
 - 관리선 사용지정 신청시 구비서류 첨부
 - 선박국적증서, 선적증서 또는 등록필증 사본
 - 관리선 사용지정증 사본, 어업허가증 사본
- 달라지는 내용
 -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한 확인 가능 서류는 어업인 동시 미제출(2종)
 - <미제출>
 - <미제출>
- 관계부서 : 농림수산식품부 양식산업과
(☎ 02-500-2380)

<연근해 및 원양어업의 조업상황 등의 보고에 관한 규칙(2008.12월)>

- 구분 : 조업상황 및 어업실적 보고 또는 제출
- 종전
 - 연근해 5톤 미만의 모든 어선은 조업상황 및 어업실적 등을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보고
 - 대상업종(8) : 연안안강망, 연안들망 연안선인망, 연안복합어업 연안자망어업, 연안선망어업 연안통발어업, 연안조망어업
- 달라지는 내용

- 연근해 5톤 미만의 어선 중 아래의 어선만 제출의무를 계속 존치
 - 연안자망어업, 연안선망어업, 연안통발어업, 연안조망어업

■ 관계부서 : 농림수산식품부 어업정책과
(☎ 02-500-2363)

<내용해설>

- 2008.12.11부터 어업인들이 자연환경 및 시장 수요의 변화 등에 탄력적이고 자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세분화된 양식물별 면허를 생태환경이 비슷한 양식물끼리 묶어서 할 수 있도록 하고, 미더덕류에 대한 시설기준 마련과 복합양식어업에 새로운 양식물로 어류, 전복 및 감태를 추가하여 양식 어업인의 소득 증대를 도모하였습니다.
- 주요 개정내용은, 양식방법이 같으면서 서식 환경이 비슷한 수하식은 파래와 매생이를 통합하고, 바닥식은 백합·고막·가무락 등을, 축제식은 어류·갑각류·해삼을 통합하였습니다.
- 또한, 어업인들의 요구사항을 반영하여 복합 양식어업에는 새로운 양식물로 어류와 전복, 감태를 추가하고, 수면의 위치와 구역도를 작성할 경우에는 세계측지계에 기준한 직각 좌표 값과 경위도 값을 표기토록 하여 구간간 거리를 명확히 하도록 하였습니다.
- 아울러, 미더덕 양식어업의 시설기준을 신설하여 미더덕류는 봉그물 수하연(1ha당 6,680줄 이하) 또는 판그물 수하연(폭 4.5m 이하, 연승 길이 기준 10% 이상의 조류 소통구를 중앙부에 설치) 시설토록하여 효율적인 양식어업 경영이 이루어지도록 하였습니다.
- 더불어, 양식어장 관리선지정 신청시에도 구비서류를 간소화하여 어업인 편의를 도모하도록 했다.

☞ 농림수산식품부 > 알림소식 > 새소식 > 보도자료 > 어업면허의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령안 시행

<어업면허의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령안 주요 내용>

- 추진배경 : 어업인들이 시장수요 변화 등에 탄력적이고 자율적인 대응이 가능하도록 생태환경이 비슷한 양식물을 묶어 통합하여 면허처분하도록 하고, 미더덕류 시설기준을 마련 및 서류간소화 등을 통해 어업인 편의 도모
- 주요내용
 - 생태환경이 비슷한 양식물은 통합하여 면허처분토록 함.
 - (중전) 수하식(건홍식) : 파래, 매생이 ⇒ (개정) 파래·매생이
 - (중전) 바닥식(간석식) : 백합, 고막, 바지락, 가무락, 동죽, 개량조개 ⇒ (개정) 백합·고막·바지락·가무락·동죽·개량조개
 - (중전) 축제식 : 어류, 갑각류, 해삼 ⇒ (개정) 어류·갑각류·해삼
 - 양식어업인 요구사항 반영
 - 미더덕류 양식 시설기준 신설 : 미더덕류는 봉그물 수하연(1ha당 6,680줄 이하) 또는 판그물 수하연(폭 4.5m 이하, 연승 길이 기준 10% 이상의 조류 소통구를 중앙부에 설치) 시설
 - 축제식 복합양식물 추가 : (중전) 어류·해삼, 갑각류·해삼 ⇒ (개정) 어류·해삼, 갑각류·해삼, 어류·전복
 - 일반 복합양식물 추가
 - (중전) 미역·우렁쟁이 ⇒ (개정) 미역·우렁쟁이·감태
 - (중전) 다시마·우렁쟁이 ⇒ (개정) 다시마·우렁쟁이·감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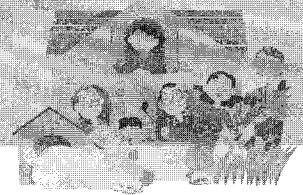
- (종전) 다시마·전복 ⇒ (개정) 다시마·전복·감태
- (종전) 미역·전복 ⇒ (개정) 미역·전복·감태
- 전자정부법에 의한 구비서류 간소화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한 확인 가능 서류는 어업인 동의시 미제출)
- 관리선사용지정 신청서의 구비서류 간소화(2종):
 - ① 선박국적증서, 선적증서 또는 등록필증 사본

- ② 관리선사용지정증 사본, 어업허가증 사본
- 시행일 : 공포 즉시 시행(2008.12.11.) ㉸

<우리 농업인뿐만 아니라 농업계 관련 종사자들에게 정보제공 차원에서 2008년도에 농림수산식품부의 달라지는 주요 농업·농촌·식품정책을 요약 정리하여 게재하였다.>

<출처 : 농림수산식품부 홈페이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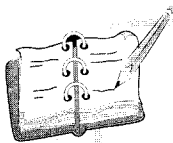
40년 역사의 자랑스러운 농업기술회보! 회원여러분의 정성과 참여를...



기나긴 역사의 소용돌이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농민의 정신혁명, 농업의 기술혁명, 농촌의 생활혁명”의 깃발을 휘날리며 곳곳하게 맥을 이어온 45년 전통의 농업기술회보가 오늘에 이르기까지 회원여러분의 끈임 없는 성원과 관심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위기 속에서도 굳건한 농심으로 농촌현장에서 농업을 지키는 회원여러분처럼, 회보 발간에 어려움이 있더라도 농업정책에 대한 여론수렴, 도·농녹색교류, 신영농기술, 세계농업동향, 회원 여러분의 각종 소식 등에 역점을 두고 회보발간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회원여러분! 여러분 주변의 일이나 농촌현장의 희노애락 어떠한 내용도 좋습니다. 회보에 많은 참여를...
회원여러분! 시내물이 모여서 큰 강을 이룹니다. 정성과 농심이 가득한 후원금을...



- 회원의 목소리 : 매달 25일까지
이메일 kafa@kafarmer.or.kr, 팩스 02)792-6972
서울 용산구 이촌동 301-87 (우)140-906
- 후원금 송금처 :
농 협 : 1394-01-000536 우 체 국 : 012211-01-000320
제일은행 : 327-20-016036 예 금 주 : (사)전국농업기술자협회
(송금자의 성명, 전화번호를 본회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